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환경변화로 국내·외 우수인재 확보에 기반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.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대학 입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,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는 기존 학령기 학생과 대학 진학의 목적 및 시점 등이 상이한 특성을 가짐.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아울러 대입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입시비리·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(안 제35조)

나.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전형기간 자율화(안 제41조)

다. 시정·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중대 입시비리가 발생한 경우,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별표 4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3) 규제심사 예정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제6호, 제7호, 제12호, 제12호의2 및 제14호다목과 제42조의6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대학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제6호, 제7호, 제12호, 제12호의2 및 제14호다목과 제42조의6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모집시기의 구분 없이 선발 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.

별표 4 제2호바목6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| | | |
|---|--|--|
| 6) 제34조를 위반하여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| | |
|---|--|--|

별표 4 제2호바목6)에 가) 및 나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) 특정인의 합격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하여 계획 수립 및 평가 운영 등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경우, 다만 2인 이상의 교직원을 포함하여 공모한 경우에 한한다.	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	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
나) 그 밖의 경우	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	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5조(입학전형자료) ①·② (생략) ③ 삭제 <u><신설></u>	제35조(입학전형자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④ 대학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제6호, 제7호, 제12호, 제12호의2 및 제14호다목과 제42조의6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</u>
제41조(학생의 선발일정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1조(학생의 선발일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대학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제6호, 제7호, 제12호, 제12호의2 및 제14호다목과 제42조의6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모집시기의 구분 없이 선발 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892
	(044) 203 - 6893